

#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최진혁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795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
발 의 자: 최진혁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곽향기, 구미경,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호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김혜지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 박 석, 박성연, 박영한, 박춘선, 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 심미경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윤종복, 이병윤, 이상욱, 이은림, 이종태, 임춘대, 장태용, 최민규, 최유희, 최호정, 허 훈, 홍국표 의원(49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에 따라 시·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개정법률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거점사업과 그 외의 사업이 모두 포함되므로 ‘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통합시행’으로 조문 제목을 변경하고, 시·도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최소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함(안 제49조의2)

나.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관련 조례조문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, 소규모재개발사업 용적률 특례 중 시·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(안 제50조, 제50조의2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등

##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2의 제목“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)”을“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통합 시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영 제40조의2제4항”을 “법 제48조제5항 및 영 제40조의2제4항”으로, “따른 거점사업의”를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은 100분의 10으로 한다.

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50조의2의 제목“(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)”를“(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)”로 하고, 같은

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법 제49조2제3항에 따라 “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

⑥ 법 제49조2제5항에 따라 “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 다만,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.

⑦ 법 제49조2제1항 단서에 따라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0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9조의2(소규모주택정비 관리 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)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거점사업의 통합 시행의 방법,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49조의2(소규모주택정비 관리 지역에서의 통합 시행) ① 법 제48조제5항 및 영 제40조의2제4항----- 따른 -----.</p> <p>②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은 100분의 10으로 한다.</p>
<p>제50조(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) ①·②(생략)</p> <p>③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</p> <p>④ 법 제49조제9항에 따라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 다만,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.</p>	<p>제50조(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) 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
<p>제50조의2(소규모재개발사업의</p>	<p>제50조의2(소규모재개발사업 및</p>

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) ① ~ ④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법 제49조2제3항에 따라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

⑥ 법 제49조2제5항에 따라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 다만,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.

⑦ 법 제49조2제1항 단서에 따라 시·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